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아동

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절도·부착명령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19. 2010고합1086,1364(병합),2010전고19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】 피고인

【검 사】 안희준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박희수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.

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.

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